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3. 3. 21.(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3년도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2023년도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 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23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2023-08-013)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2023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2023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조선방송 재승인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조선방송에 대해 <별지 1> 또는 <별지 2>의 기재내용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3년 4월 22일부터 ‘27년 4월 21일까지 4년으로 한다’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승인 유효기간이 2023년 4월 21일 만료되는 (주)조선방송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1일에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한 후, 2022년 10월 21일에 (주)조선방송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시청자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고, 2023년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재승인 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들로 총 13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명단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3년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3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심사평가 결과, 총점 689.42점을 획득하였고, 중점 심사사항에 과락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별 평가 결과 점수와 총점은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심사위원회 주요 심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소견입니다. 2020년과 비교하여 심의제재 건수가 감소하는 등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다고 판단되나,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성 프로그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청자·수용자 속성 고려 및 제작·방송 이후 공익성 평가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상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이나 경영전략 및 관리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재난방송의 신속성·정확성을 확대하고 재난정보에 대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별 소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부분입니다. 해당 심사항목의 이행실적은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 반면 실현계획은 구체성·타당성이 떨어지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심의제재 건수가 감소하는 등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다고 판단되나, 프로그램 내용과 편성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므로 팩트체크 관련 조직 확대 개편과 교육 확대 등 노력이 필요하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에 있어 취재보도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적으로 마련된 내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쳐 전문 외부기관 선정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실적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지역 민방과 SO 등과 협력하여 지역특화 프로그램 제작·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심사 항목의 이행실적은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 반면 실현계획은 구체성·명확성이 떨어지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익성 프로그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청자·수용자 속성 고려 및 제작·방송 이후 공익성 평가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를 마련하고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 노동권과 사생활 보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적극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부분입니다.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이나 경영전략 및 관리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충분하지 않으며,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방송사의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UHD, Post visual, 메타버스, AI 등 미디어 선도 기술과 서비스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부분입니다.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보이나,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의 시정과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건강한 방송 생태계 조성 및 외주 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콘텐츠 사업의 육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난방송 실적은 충실한 것으로 보이나 재난방송의 신속성·정확성 제고를 위해 재난방송 조직·인력 전문성 강화, 재난방송 교육 및 모의 훈련 확대,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완 등이 필요하며, 재난정보에 대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에 대해 상임위원님들 논의를 거친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승인 여부 및 유효기간입니다. 방송법령 및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계획」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조선방송은 중점심사사항 과락 없이 689.42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므로 승인 유효기간은 4년을 부여하고, 매년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건 및 권고사항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고 지난 2020년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관련 교육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하여 운용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한 기자·PD 등에 대해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선거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건 부과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위반 관련 조건 위반 판단 시 재·보궐 선거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확대와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및 방송의 품격제고를 위해 관련 권고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소수이거나 이익 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성·보도의 독립성 및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구성 시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사 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의 품격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팩트체크 제도를 시사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조건과 권고사항 부과 최소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유연성·탄력성 제고를 위해 콘텐츠 투자계획 미달 금액을 재승인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과 별개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실적이 점검·보고되고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의 조화로운 편성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장르별 편성계획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관련 권고사항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유·경영 분리와 관련하여 2020년 재승인 시 부과한 권고사항을 유지하되 최대주주사로부터의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이 해소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전문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관련하여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안)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심사위원회(안)을 수용하는 <1안>과 기존 조건과 통합하여 조건으로 상향하는 <2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2023년 3월 말에 (주)조선방송에 대해서 승인장을 교부하고, 3월 말에 재승인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적시한 별지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관련하여 권고사항으로 기재된 <별지 1>과 조건으로 기재한 <별지 2>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붙임>으로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와 종합편성PP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심사를 담당하신 심사위원회와 사무처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조선방송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총점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89.42점이며, 중점심사항목의 과락도 없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2020년 재승인 평가

이후 (주)조선방송에 전반적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항목 중 특히 방송평가 분야 100% 기준 달성도 81.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달성도 69.9% 등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주)조선방송이 그간 방송심의규정 준수 노력, 편성위원회 운영, 재난방송 편성 등 공적책무를 이행하였으나 실현계획의 구체성·타당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주)조선방송은 향후 방송의 공정성 관련 조직·인력의 전문성 강화, 공익성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의 객관성 제고 등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해서 심사위원회(안)을 수용하는 <1안>에 찬성합니다. 나머지 유효기간 4년의 재승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별지 1 권고사항 <1안>에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TV조선 심사 결과 전체적인 성적표가 향상됐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본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여전히 미흡한 분야가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책임 영역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다룰 때 지켜야 할 보도준칙, 윤리강령 부분인데 TV조선 기자가 과잉 취재 혹은 불법 취재 논란으로 벌어져서 취재준칙 위배라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취재보도준칙이라는 자율규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또 TV조선 중견 언론인이 항응과 금품수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윤리강령 위배 논의는 호지부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를 다루기 위해서 윤리위원회가 개최됐다는 것을 추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법적 판단을 받고 난 뒤에 살펴보겠다는 것이고 그런 처벌을 미룬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취재준칙이나 윤리강령 위배 등은 모든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갖춘 자율규제 제도입니다. 자율규제 제도는 법이라는 타율 규제에 앞서서 방송사 스스로 자구책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취하는 선행 임시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선진 언론에서도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방송, 언론의 자율성·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또 다시 반복되는 조건과 권고 내용을 보면 TV조선의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취재보도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을 재정비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즉, 현재 수준의 취재보도준칙이나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내적 통제장치로 기능하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3가지 주문을 TV조선과 동시에 사무처에도 하고자 합니다. 먼저 TV조선 측입니다. 첫째, 취재보도준칙, 윤리강령을 만들어 놓지만 말고 해당 언론인과 간부 등 매년

교육을 한 차례 이상 의무화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는 임시로 필요할 때 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상·하반기나 분기 정례화하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에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주문과 또 위원회 거듭 논의를 해서 조건과 권고를 제시했다면 TV조선의 보고만 수동적으로 받지 말고 담당자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제대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자체적으로 모니터해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현장점검을 가더라도 그들이 내놓는 일방적인 자료에 의존하지 말라는 주문입니다. 한국의 방송사를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데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당부를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TV조선이 고질적인 공정성·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나아가 한국의 모든 방송사가 준수해야 할 필수무사항으로 한국 언론사가 신뢰 회복의 지름길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나왔던 권고 <1안>을 할 것이냐, 조건 <2안>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조건을 내걸어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아주 조심스럽게 권고안으로 내놨습니다만 지난번 조건에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건으로 여전히 남겨둬야 한다는 판단으로 <2안>을 택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2023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주)조선방송 재승인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게 됐다는 점과 아울러 2020년 재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된 문제를 둘러싸고 사무처 직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곧 재판이 열립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사무처가 심사위원회 구성과 또 심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많은 단체가 있었음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이번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공정성 진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법적 근거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과 관련해서 「방송법」 제5조 제2항,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법」 제6조 제1항,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대담·토론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토론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균형성에 대해서 방심위는 심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객관적 진단 재승인 조건 부과와 관련된 점입니다. 2020년 (주)조선방송 재승인 심사위원들은 공정성과 공적책임이 중요함에도 사업자의 자체평가 결과만으로 심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나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하였습니다.

(주)조선방송 내부의 시각이 관여하지 않는 객관적인 외부의 진단을 받아보는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8일 재승인 신청법인 의견 청취 시 (주)조선방송 대표자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 진단을 실시하겠다는 진술을 하는 등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입각하여 재승인 조건이 부과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공정성 진단 이행 여부입니다. (주)조선방송은 2020년 재승인 조건에 따라 2021년부터 공정성 진단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연구용역보고서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등 부과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15일 사무처와 종편PP 간 간담회에서 2022년도 분석부터는 전체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재승인 조건 이행의 충실성을 제고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이에 사무처는 2022년 9월 19일 공적책임 진단보고서 작성 관련하여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달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주)조선방송이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제출한 보고서는 공정성을 기계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객관성이 결여되는 등 조건 부과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연구 실적과 데이터가 축적된 미디어 전문기관이 아닌 2022년 1월에 설립된 연구소에 의뢰하여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등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무처는 상임위원 간 견해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재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행여부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위원회 회의에서 본 위원은 (주)조선방송의 2022년도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과 관련하여 용역보고서의 내용 중에 객관성과 합리성·충실성 부족 및 미디어 전문기관 미선정 등 사실상 재승인 신청서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조선방송은 2020년, 2021년 공적책임 진단보고서 수행을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에 의뢰하였으나 2022년도 보고서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3일 재승인 심사 신청법인 의견 청취 시에 (주)조선방송 경영기획실장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했던 분들이 나와서 만든 조직으로 방통위도 직접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관으로 연구 역량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연구소는 2022년 방통위 정책연구과제 중 <1> 디지털 성범죄물에 관한 기술적 조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2> 디지털 대전환 환경에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연구, <3> 방송통신 정책 홍보 및 대외 메시지 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등 3건을 수행하였고, 방송의 공정성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는 없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주)조선방송 정책기획팀장이 타 종편PP도 객관성 진단을 받다 보니 방송학회는 선정이 어려워 연구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수용하면 의뢰하는 형식으로 신생 연구소를 선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도 종편PP의 공정성 진단을 수행한 기관은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미디어인권연구소, 정보통신정책학회, (사)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에 미디어 관련 전문기관이 이 곳뿐이라는 식의 설명은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쉬운 곳을 선정하여 조건 부과의 취지를 훼손하고 왜곡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2023년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2023년 (주)조선방송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사무처에 심사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의 첫째 지적이 2020년과 비교하여 심의제재 건수가 감소하는 등 재승인 조건과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다고 판단되나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

한 공모 절차를 거쳐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과 동일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방송 관련 전문 외부기관을 복수로 선정하여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진단을 받으라고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정성 진단을 위해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적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부과된 조건이 향후 위반의 소지가 적거나 사업자의 제도 개선이 완료된 경우 부과에서 제외되거나 권고로 하향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주)조선방송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진단 관련, 재승인 조건을 이행·완료하였거나 향후 위반의 소지가 적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향후 5년간 사업 계획에는 외부전문기관의 객관적 진단 내용이 미포함되어 이행을 담보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방송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명시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노력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2020년 (주)조선방송의 법정제재 건수가 8건이었고, 2022년도에는 1건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 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018년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2022년 대선 역시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에서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공정성 진단이 법 위반에 대한 견제 기능과 사업자의 자정 노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가치는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사업자의 임의적 협력에 기대하는 것은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자정능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 부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는 재승인 심사가 방송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구현하는 수단이자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조건 <2안>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먼저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재승인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 사무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법에 따라서 관련 기준, 위원회 재승인 계획, 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조선방송의 재승인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심사에서 지난번 재승인과 비교했을 때 조건과 권고 사항을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위원회가 민영방송사에 수많은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여하는 경우 민영 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경영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시장 경쟁 상황 그리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고려해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승인 조건 부과와 관련해서 공적책임·공정성 진단 항목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발표했던 재승인 기본계획이나 세부 계획에서 가급적 조건 부과를 최소화한다고 명시하였고,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할 때 해당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명시한 <1안>이 합당해 보입니다. (주)조선방송은 향후 더욱 고품격·고품질의 방송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승인 조건 3항과 관련해서 심의 법정제재 건수를 5건 또는 2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종래에는 전국단위 선거에만 한정해서 카운트 대상이었지요?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 부분이 이번에는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모든 선거의 법정제재 건수가 조건으로 포함된다는 점이 변경사항인 것이 맞지요?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내용 중에 중요한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사무처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데 유일하게 외부 진단을 받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는 내용을 조건으로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듯 싶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런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으라는 조건을 예전에 부과했던 것은 내부의 시각만으로 자사의 프로그램을 바라보지 말고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고 그 부분들을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적한 바와 같이 진단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일부 프로그램에 한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진단을 맡은, 진단을 수임한 외부 기관도 과연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지 의심이 되는 기관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문제의식,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구체화한, 종전과 달라진 것은 매년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방송 관련 전문 외부기관을 복수로 선정하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에 충실한 기관들을 선정해서 객관적 진단을 받으라는 좀 더 강화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것들을 조건으로 하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라는 심사위원회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쪽 의견도 타당하지만 이런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방송 관련 전문 외부기관을 복수로 선정하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객관적 진단을 받으라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단순히 권고로 그치고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추후 이행상황을 점검해서 만약

부족함이 있다면 향후 조건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강화된 내용을 반영하는 이런 진단내용을 권고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내용, 결국 (주)조선방송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1안>에 따라 재승인을 의결하고자 하고 사무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종편PP 출범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심사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대로 '20년 재승인 당시보다는 평가점수가 향상되었다는 것이 객관적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 의견에 예전의 중요한 조건들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종래에 가졌던 문제의식과 부족한 점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이나 권고 사항이 단순히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이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특허사업자인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공적책임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해서 이 조건과 권고 사항들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난번 (주)조선방송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 위원회가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만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거운 심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준 사무처 직원 분들의 노고에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사항 <1안>에 따라 사무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3-08-014~027)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주식회사 사이버프리 등 14개사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주식회사 사이버프리 등 14개사에 대해 「위치정보법」 제14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제1항, 제43조제2항에 의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경과사항입니다. '21년 9월~'22년 4월까지 생활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실태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배달 서비스 앱 12개사,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앱 12개사, 허가조건 이행 점검 대상 72개사에 대한 서면 점검을 실시하였고, '22년 5월~7월까지 서면점검 결과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배달 서비스 앱 12개사 중 6개사, 공유 모빌리티 앱 12개사 중 8개사, 허가조건 이행 점검 대상 72개사 중 16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배달 서비스 앱 4개사, 공유모빌리티 서비스 앱 8개사, 허가조건 이행 점검 대상 2개사의 위치정보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22년 8월~'23년 1월까지 사업자 제출 의견과 행정처분(안)을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현황입니다. 먼저 배달 서비스 앱 4개사는 (주)사이버프리, (주)아람솔루션, (주)떡깨비, 코리아경기도(주)입니다. 이 사업자들은 이용자 스마트폰 GPS를 통해 주문자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여 배달장소 입력에 도움을 주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앱 8개사입니다. (주)올룰로, (주)피유앰피, (주)지바이크, (주)매스아시아, (주)버드코리아, 빔모빌리티코리아(주), 뉴런모빌리티코리아(주), 라임코리아(유)입니다. 이 회사들은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GPS 단말기를 통하여 수집된 위치정보와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통하여 파악한 개인위치정보를 연동시켜 근처 전동킥보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가조건 이행 점검 대상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2개사)입니다. (주)휴렌은 건설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위험구역 알림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에이치앤아이는 차량 및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내비게이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주)사이버프리의 사실관계 및 위법성 검토 내용입니다. (주)사이버프리는 이용자 연령 및 개인정보책임자 등 이용약관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이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용자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 및 검사를 거부·기피하여 위치정보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당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위치정보법 제12조제1항,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제43조제2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별표5]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사이버프리는 소상공인으로서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므로 해당 과태료 기준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경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아람솔루션입니다. (주)아람솔루션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장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위치정보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 제2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5]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주)아람솔루션은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 결과를 시정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떡깨비입니다. (주)떡깨비는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등 이용약관 내용을 2차례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이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용자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주)떡깨비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위치정보법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제43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각각 적용 가능합니다. (주)떡깨비는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 결과를 시정 완료한 것이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코리아경기도(주)입니다. 코리아경기도(주)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통위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고 '20년 12월부터 사업을 영위하여 위치

정보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발 여부 검토(안)입니다. 수탁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지위가 있어 위탁사인 코리아정기도(주)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했던 점, 실태점검 중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여 자진 시정한 점을 고발 여부 검토 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위치정보법 별칙규정에 따른 고발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행정형벌은 행정상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고발 여부는 위반 정도·태양·결과, 행정처분으로 행정 목적 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올룰로입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법적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만 신고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발 여부에 대하여 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다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점, 실태점검 중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완료하여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피유엠피입니다. (주)피유엠피는 이용약관에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의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피유엠피는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 결과를 시정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지바이크입니다. (주)지바이크는 이용약관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의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주)지바이크는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 결과를 시정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을 감경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메스아시아입니다. (주)메스아시아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법적 의무를 오인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만 신고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고발 여부에 대하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다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점, 실태점검 중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완료하여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버드코리아입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통위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주)버드코리아는 관련 등록 및 신고 절차를 마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여 해당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위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치기반서비스업 신고 위반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발 여부 검토에 대하여는 실태

점검 중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등록 및 신고를 완료하여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빔모빌리티코리아(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발 여부에 대하여는 실태점검 중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등록을 완료하여 자진 시정한 점을 참작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뉴런모빌리티코리아(주)입니다. 마찬가지로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등록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등록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여 해당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뉴런모빌리티코리아(주)는 매출 부진, 키보드 건인 규제 등의 사유로 국내 사업을 철수한 상태이며, 현재 법인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뉴런모빌리티코리아(주)는 영업소를 폐쇄한 상태이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모두 외국인으로서 수사 실효성이 떨어져서 뉴런모빌리티코리아(주)를 고발하는 여부에 대해서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임코리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치정보사업 등록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등록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여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라임코리아(유) 역시 매출부진, 키보드 건인 규제 등의 사유로 국내 사업을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라임코리아(유)는 이미 법인 해산하였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모두 외국인으로서 수사 실효성이 떨어져 고발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휴랜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암호화 조치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주)휴랜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장 과징금 부과(안)입니다. 위치정보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관련 매출액입니다. (주)휴랜의 '21년도 IMOS 소프트웨어 매출액인 16억 8,200만 원을 연평균한 금액인 19억 8,600만 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부과기준율 및 기준금액입니다. (주)휴랜은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위치정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치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부과기준율은 1.5%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2,980여만 원이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이 가능하고, 위반행위 기간은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위반행위 개선을 완료한 날까지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이므로 4분의 1을 가산하게 됩니다. 최근 3년간 위치정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반기간으로 가산한 금액에서 2분의 1을 다시 감경하게 됩니다. 추가적 조정으로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에 대한 가중·감경이 가능한데 추가적 가중사유는 해당사항이 없고, 방통위 점검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100분의 30을 추가적으로 감경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한 기준 금액에 필수적·추가적 조정을 거친 결과 (주)휴랜에 대하여 1,303만 8,560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발 여부는 실태점검 중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전송 시 암호화 조치를 하였고, 저장 시 암호화 및 서버용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자진

시정한 점,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에이치앤아이입니다. (주)에이치앤아이는 인가를 받지 않고 '22년 1월에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주)에이케이티공간정보를 흡수 합병하여 위치정보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최근 3년간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에이치앤아이는 사전 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내에 이를 시정 완료한 것이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 감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으로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발전 및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영세한 사업자도 직접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여 다수의 사업자들이 위치정보사업 등록과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맞게 향후에는 사업자 구분을 폐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진입 규제도 신고제로 전환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고지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록 또는 신고 절차 전후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지위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존에 안내한 해설서 외에 구두, 문자, 공문 등으로 고지하여 법적 의무 인지 가능성 제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23년 4월 중에 행정 처분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별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내용이 과징금(안)은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최종과징금 1,300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안)이 올라와 있고, 과태료(안)에서는 <1안>으로 기준금액 그대로 부과하는 안, <2>안은 여러 가지 사유로 2분의 1 감경하는 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두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발 여부 검토(안)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나 지금 위치정보사업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는 안, 고발하지 않는 안으로 두 안 중 하나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고발 여부부터 보면 뉴런모빌리티코리아(주)와 라인코리아(주)는 이미 폐업했기 때문에 고발에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위원장 말씀대로 지금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안 마련이 진행되고 있으니 저 역시 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들이고 그리고 어진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모두 감경한 안 <2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김효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도 개선 추진(안)에 보면 위치정보사업 등록과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와 같은 사업자 구분을 폐지해서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진입 규제도 신고제로 전환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들을 꼭 보면 상당히 홍보가 부족해서 단순한 실수나, 몰라서, 오인해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도 개선과 함께 어떻게 더 잘 홍보해서 이런 사소한 실수로 인해 이런 과징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진입 규제 완화와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운영 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과징금은 원안에 동의하고, 과태료는 <2안> 그리고 고발하지 않는다 <2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는 사업자 고지 강화를 위한 구두, 문자, 공문 등 법적 의무 인지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는데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과징금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무처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대상 사업자들을 보면 영세 사업자인 경우이거나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추후 개선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2분의 1 감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치정보사업 미신고·미등록 사업자는 추후 위반사항을 대부분 자진 시정했고, 또 일부는 폐업 등으로 조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고발 조치하지 않음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과징금은 원안대로, 과태료는 2분의 1 감경안 <2안>, 그다음에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는 <2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같은 의견이시고, 또 형사 범규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법적 의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데서 기인한 상황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신고하거나 등록하거나 하는 법적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행정청이 그런 의무의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향후 제도 개선 사항으로 추진하겠다고 사무처가 이야기한 사업자 고지 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징금(안)은 사무처 원안 그리고 과태료(안)는 사무처안 중 2분의 1 감경안 <2안> 그리고 고발 여부 검토는 별도로 고발하지 않는다는 사무처 <2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위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동일 심의규정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 (2023-08-028 ~ 031)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다> “동일 심의규정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동일 심의규정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4에 따라 (주)씨제이이엔엠, (주)우리홈쇼핑, (주)서울경제티브이에 과징금 천오백만 원(1,5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머니투데이방송에 대하여 과징금 삼천만 원(3,000만 원)을 부과한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4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7월, '17년 1월부터 '22년 6월까지 관계자 징계 등 제재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를 조사하였습니다. '22년 12월 「방송법」 제100조제3항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23년 1월 대상 사업자에게 과징금 사전통지를 시행하였습니다. '22년 3월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과 관련하여 2차 법률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관련 규정입니다. 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정정·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받고, 위 제재조치를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66조의4에 따라 방통위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70조 관련 [별표5]너목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3천만 원이며,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해서 50%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 심의규정 반복 위반 사실입니다. (주)씨제이이엔엠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을 위반하여 '17년 4월 25일 제재처분(관계자 징계 및 경고)을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동일 심의규정을 3회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주)우리홈쇼핑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을 위반하여 '19년 9월 18일 제재처분을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동일 심의규정을 3회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서울경제티브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18년 5월 8일 제재처분(관계자 징계)를 받은 이후 1년 내에 동일 심의규정을 3회 위반하였습니다. (주)머니투데이방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품위유지)제5호를 위반하여 '19년 8월 12일 제재처분 관계자 징계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동일 심의규정을 3회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사자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씨제이이엔엠은 「방송법」 제100조제3항각호에 해당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3번의 위반 중에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의' 1건, '경고' 1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건 과징금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17년 8월 10일자 위반에 대하여 이미 과징금 3,0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3회 위반을 사유로 한 과징금은 이중제재로서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우리홈쇼핑은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가중처분 대상 위반 건수는 “처분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따라서 '주의', '관계자 징계' 처분 2회 위반만 존재하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최초 제재처분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묵시적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3항제3호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본 건 과징금은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의견으로 50% 감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서울경제티브이는 3건 위반이 1주일 사이에 방송되었고, 방심위로부터 하나의 공문을 통해 위반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길 요청하고, 중소기업체로서 '18년 약 1.2억 순익, '19년 약 0.5억 적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참작해 주길 요청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진력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주)머니투데이방송은 「방송법」 상 위반행위는 방송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므로 MTN의 위반행위는 1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3회 이상의 위반을 한 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타법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본 건 처분도 제척기간을 3년으로 봐야 하며, 최초 위반행위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본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권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입니다. 판단기준입니다. 우선 「방송법」 제100조 제3항은 반복적 위반행위를 가중 제재함으로써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심의규정 준수 등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송법」 제100조제1항 및 제3항제3호에서 “위반 행위”와 “제재조치”에 대해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일이 아니라 심의규정 위반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시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자 징계’ 조치를 받고도 동일 심의규정을 1년 내 3회 위반한 행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자 징계’ 등 제재 처분 후 1년 이내에 동일 심의규정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본 건 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방송법」 제100조제3항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제척기간은 방통위 소관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등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처분 대상 4개 사업자 모두 3회차 위반행위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부과 여부입니다. (주)씨제이이엔엠과 (주)우리홈쇼핑, (주)서울경제티브이와 (주)머니투데이방송은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관계자 징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심의규정을 3차례 위반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와 방송의 공익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송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방송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이 타당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부과(안)입니다. 상임위원회 간담회 논의를 거쳐 다음의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씨제이이엔엠은 3건의 위반행위 중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한 제재조치인 ‘주의’ 1건, ‘경고’ 1건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3,000만 원)에서 50% 감경한 천오백만 원(1,5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입니다. (주)우리홈쇼핑은 3건의 위반행위 중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한 제재조치인 ‘주의’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서 50% 감경한 천오백만 원(1,5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입니다. (주)서울경제티브이는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한 제재조치인 ‘주의’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서 50% 감경한 1,5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입니다. (주)머니투데이방송은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계자 징계 조치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감경 없이 기준금액인 삼천만 원(3,0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3월 말에 과징금 부과 통지 및 납부절차 등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사업자들 의견을 보면 위반행위를 한지 3년이 훨씬 넘어서 지금 이런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행정청의 이른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CJ오쇼핑 (주)씨제이이엔엠의 경우는 마지막 위반이 2018년 4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올 4월 4일이면 5년도 더 지난 것이지요. 며칠 남지 않은 것이고, 대개 3년이 다 넘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약간 엉뚱하다, 갑작스럽고 뜻밖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소송할 우려는 없습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사업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소송 관련된 의견은 들은 바 없지만 사업자 의견이 제출된 형식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신뢰보호원칙이라든지 비례원칙을 지적하고 있어서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실제로 갑작스럽다는 느낌은 저 혼자만의 느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척기간 5년의 기준이 방송법에 나와 있습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방송법에는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척기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행정기본법에 행정청에서 제척기간을 삼는 부분이 5년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또 방통위가 소관하는 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단말기유통법에서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과징금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척기간이 5년 이내에 해당된다면 소송에 가더라도 크게 다들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현재 발견된 법령에 위반된 것이므로 행정청에서 이것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하는데, 여하튼 방통위가 이런 처분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무엇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었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무에서도 이렇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17년부터 '22년까지 5년에 걸쳐 법을 위반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3회 위반한 경우를 가지고 제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안이 있는지를 각별히 살펴서 5년을 묶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검토해서, 그렇게 되면 내년이지 않습니까? 잘 살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관계자 징계'라든지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등 중징계일 경우 1년 이내 3회 반복이어서 해당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아서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사업자에게 통지해서 재발 방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진 통신분쟁조정팀장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올해 1월 3일 개정돼서 7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령(안)은 행안부 협의를 마친 안입니다. 먼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아래 <별표>를 보시면 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위원 30명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했고, 두 번째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두어 소위원회 결정 또는 주심위원회 결정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기존의 수당과 여비규정은 조정 사건별 조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보완했고, 네 번째 방통위 사무처의 분쟁조정위원회 지원 근거와 일부 업무의 위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3페이지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4월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중 위원회 의결, 6월 국무회의를 거쳐 7월 4일 공포·시행됩니다.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3년도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2분 폐회 】